
세무(3)분야 서비스 이행기준

1. 지방세정 홍보강화

-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케이블 TV, 구 홈페이지, SMS,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매체 및 기법을 이용하여 세무 행정에 대해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2. 납세자의 권리보호

- 「납세자 권리헌장」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, 납세자 과세정보 제공 시 법에 명시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겠습니다.
- 과세처분을 받은 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이의신청·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- 지방세 비과세·감면 대상자에게는 비과세·감면 범위와 요건 등을 홍보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.

3. 신속·정확·공정한 세무서비스 제공

-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 처리 시 사실 확인을 거쳐 부당하게 납부한 세금은 즉시 납세자에게 환급 처리하겠습니다.
-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**인터넷지로, 위택스**를 통한 온라인 납부, **카카오페이** 등을 통한 모바일 페이 납부, **지방세 ARS 납부, 자동 계좌 이체 납부** 등의 다양한 납세자 맞춤형 납부제도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지방세 징수 현황 등 각종 통계조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과세 자료를 완벽히 구축하여 부과 착오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납세자가 정당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전자 고지서나 모바일 고지서 등 다양한 고지서 송달 방법을 통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4. 서비스별 접수문의 창구

서 비 스 명	담 당	전 화 번 호	팩 스 (FAX)
세입통계, 과오납금 환부	세입운영담당	220-4231,4	220-4239
세외수입 체납처분, 압류해제	세외수입담당	220-4371~4	
지방세 체납처분 (재산 압류, 공매, 번호판 영치)	체납정리담당	220~4241~5, 220~5321~3	

5. 구민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

- 구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지방세는 우리 구의 중요한 자주 재원입니다.
각종 지방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시어 원활한 구정 수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민원 서류 신청 시 미리 전화로 구비 서류 등을 문의하여 주시면 서류 보완을 위해 재차 방문하는 일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.
- 납부하실 지방세가 체납되면 체납처분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